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 1.



고용노동부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및 추진근거	1
2. 참여 주체별 역할	2
3. 사업 운용	2
4. 사업 추진 체계	3
II. 지원 대상	4
1. 지원 대상	4
2. 지원 제외	7
3. 재참여 제한	10
III. 지원 요건	11
1. 기업 요건	11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13
IV. 지원 내용	19
1. 지원 한도	19
2. 지원 수준	21
3. 지급기간 및 주기	23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25

V.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26

1. 장려금 지급 신청 26
2. 장려금 지급 28

VI.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31

1. 지도 및 점검 31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32
3.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사항 36

VII. 시행일 및 경과규정 37

■ 서 식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41
 - * (붙임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42
 -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3
 -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4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결정 통지서 45

■ 별 첨

1.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49
2. 성장유망업종 범위 57
3. 지식서비스산업 65
4. 문화콘텐츠산업 66
5. 벤처기업확인서(양식) 67
6. 지원제외(소비·향락업 등 업종) 68

I. 개요

1 목적 및 추진근거

1-1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

-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3 해석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참여 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본부

- ① 동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③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인식 확산 및 제도홍보
- ④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 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② 사업의 홍보 및 대상 사업장 발굴
- ③ 장려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장려금 지급
- ④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 ⑤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2-3 사업주

- ①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장려금 수령
- ②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2-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 관리·운영

3 사업 운용

- '21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체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장려금 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

①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② 청년 실업자 : 사업주
신규채용 - 청년 신규 채용



③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3~9개월 단위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④ 장려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지도·점검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⑤ 평가 및 사후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관리

Ⅱ.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1-1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Ⅲ. 1-1. “기업요건” 참조)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 「고용보험법」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상용근로자에 국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참고)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과 확인방법

❖ 매출액은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3개년의 평균 매출액으로 확인 가능하며, 결산일은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음

* (예시1) '19.10.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20.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31.임

→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예시2) '20.3.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 '20.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31.임

→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예시3) '20.5.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01.~ '21.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9.12월임

→ 따라서 '19~'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참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결산월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이며,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에만 발급 가능

(예시) '18. 12. 31. 결산 → 유효기간 '19. 04. 01. ~ '20. 03. 31.

'19. 03. 31. 결산 → 유효기간 '19. 07. 01. ~ '20. 06. 30.

'19. 06. 30. 결산 → 유효기간 '19. 10. 01. ~ '20. 09. 30.

1-2

다만, '19년 연평균 ('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성장유망업종 (별첨 1, 2)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별첨 1.> 주요품목 또는 <별첨 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확인(업종 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 (별첨 5)’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별첨 3)

*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

④ 문화콘텐츠산업 (별첨 4)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1-3

위 1-1, 1-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19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가능

1-4

위 1-1, 1-2, 1-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20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참여 가능

- 단, 1-3, 1-4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1-3('19년 말일 기준)을 우선 적용

예 시

1. '19년 연평균 피보험자가 4명인 기업이 '19.12.31 피보험자가 6명이 된 경우, 동 기업은 '19.12.31부터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므로 '20년 중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 전체인원이 6명보다 증가할 경우 지원 가능
2. '19년 연평균이 4명, '19.12.31 피보험자가 6명, '20.1.31 피보험자가 5명인 경우는 '19.12.31.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추가채용여부 판단

2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68),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기준 기타 gambling 및 betting), 무도장운영업(91291) 등

-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별첨6」 지원제외(소비·향락업 등 업종) 참조

** 다만 숙박업종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④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매년 인사혁신처장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

⑦ 정부·지자체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관

2-3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불가

2-5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사업주)

* '20년 이전 1년간('18.12.1~'19.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확인 방법)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

2-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불가

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2-9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2-10

관련 사업주 등(이하에서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

- 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②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받은 사업주인 경우
-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3 재참여 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3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기간 종료후 재참여 할 수 없음

III. 지원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 기업 요건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단, 아래의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은 ‘20년 12월말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 판단 기준

1) 기존 기업

- ‘19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하되, ‘19년중 고용보험 신규성립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19년말 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2) ‘20년 신규성립 기업

- ‘20년중 고용보험 신규 성립기업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3) 위 1), 2) 기준으로 기업규모 판단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미만)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9년도 말일 기준 이거나 ‘20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①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Ⅲ. 1-1.참조)”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 '19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② 다만,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에서,
 - '19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 말일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거나,
 - '20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예 시

'19년 연평균 및 연말 피보험자수 4명인 기업이 '20.2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5명(기업요건 충족)이 되고, '20.3월 이후로 청년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6명)하여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채용 1명에 대해 지원가능

- ③ 기업 전체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 단위(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로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Ⅳ.3. 참조)

1-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①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 등을 합한 수로,
 -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 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 청년 '추가' 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로 '20년 이전 성립기업은 '19년 (연)평균, '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 ②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유지 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비교·판단
 - 기업이 동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은 장려금 지급이 중단

예 시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6명인 기업이 '20.2월 청년을 2명 채용한 후 '20.2월말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8명이 된 이후, '20.5월 청년 이외 다른 근로자 퇴사로 '20.5월말 기준으로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7명인 된 경우

⇒ '20.2월 청년을 2명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가 2명 증가하였으므로 2월부터 청년 2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20.5월부터는 청년은 2명 재직하고 있으나 기업전체의 근로자가 1명만 증가하였으므로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받게 됨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 ① '20.1.1. ~ '20.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만 청년연령을 연장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② '20.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 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 시작

기업에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의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의 지원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채용일, 지원금 시작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 ③ '20.1.1. 이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

- ④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특례

- (지원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참여 중 포함)한 근로자
 -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
- (신규채용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0.8.15. 청년을 채용(기간제 6개월)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동 청년을 '21.1.15.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20.8.15. 기준(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 (장려금 지급 제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 (예시) '20.8.15. 청년을 채용(기간제 5개월)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5개월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동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간(5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특례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규정을 적용

- ①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함

예 시

○○기업에서 '20.2.15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2월)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산정하여 '20.7.31.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된 것임

- ②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월로부터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내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등)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이며, 이는 '20.12.31.까지 완성되어야 함

☞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가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한 청년은 추가고용이 아닌 퇴사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20명인 기업이 '20.10월 청년 1명 채용하였으나, 같은 달 기존 재직자 1명 퇴사 후 '21.2월 청년 1명을 채용하여 '21.2월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2.31.까지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요건을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20.10월 채용한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시

○○기업에서 '20.1.15. 채용한 A청년과 '20.6.15. 채용한 B청년을 '20.12.15. 소급 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20.1월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날(6월말)의 다음날(7.1)부터 3개월 이내인 '20.9.30.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B청년에 대해서만 '20.6월부터 지원 시작하여 지급처리

● 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특례

- (취지) '20.8월말 사업마감으로 인해, 청년을 신규채용하였음에도 '20년중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위 2-3.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해당 기간중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한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적용대상) '20.1월부터 6월 기간 중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 (신청기한) '21.3월말까지
- 특례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규정을 적용

2-4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5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⑤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단,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13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업은 지원대상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지원신청시 제출

-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20.10.5.이후로 취업한 자('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반영)

◆ 2/3 출석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기업은 해당학교로부터 2/3 출석확인서 등을 받아 지원신청시 제출

- ⑦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⑩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⑪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74100)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 다만,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⑫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1. 지원제외, 2-1. 소비·
 향락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V.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1-1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1-2 '19년, '20년 신규 성립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 '19년, '20년에 고용보험을 신규로 성립한 기업에서 '20년에 청년을 채용하여 '20년에 최초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20년 지원인원은
 -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은 6명까지만 지원

*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성장유망 업종·벤처기업 등에만 해당

1-3 '19년 신규 성립한 既 참여기업* 중 '20년에 청년을 추가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원인원을 재설정

- * '19.8.20 이후 신규로 신청하여 성립월말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지원한도가 설정된 기업(성립월말 피보험자수 1~4인 3명까지, 5~9인 6명까지)
- 동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로 함
- '20년 청년 채용자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한 청년 인원수와 '19년 청년채용자 중 해당 월말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수*(지원한도 초과시 한도인원**)를 합한 수 만큼 지원함

* 다만, '19년 청년 채용자가 '20년 해당 지급월말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19년 성립월말 등 기준 피보험자수와 '20년 해당 지급월말 전체 피보험자수와 비교하여 실제 증가된 인원만큼만 지원('19년 성립월말 등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19년에 지원한도 이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이미 지원대상에 제외되었으므로, '20년에 다시 지원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예 시

- ① '19.2월 성립당시 월말 피보험자수가 4명인 기업이 아래와 같이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동 기업의 '19년 및 '20.1월부터 '20.4월까지의 각 지원인원은

	'19.2월(성립)	'19.3월	'19.12월	'20.1월	'20.4월
채용인원		청년 5명 장년 4명	장년 5명 퇴사	청년 5명	19년 채용 청년 4명 퇴사
피보험자수	장년 4명	13명	8명	13명	9명
지원인원		3명	3명	4명	1명

⇒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 $\{4\text{명} + (13\text{명} \times 9\text{개월}) + (8\text{명} \times 1\text{개월})\} / 11\text{개월} = 12\text{명}$

<지원인원 산정>

- '19.3월~'19.12월까지는 청년 5명중 한도인원 3명 지원
- '20.1월~3월은 4명 지원 : '20년 청년 채용자 중 증가인원 1명 + 지급 월말 기준으로 '19년 청년 채용자 재직인원이 5명이므로 한도인원 3명
- '20.4월은 1명 지원 : '20년 채용자 중 증가인원 0명 + 지급 월말 기준으로 '19년 청년 재직인원은 1명이므로 1명만 지원

- ② '19.2월 성립당시 월말 피보험자수가 4명인 기업이 아래와 같이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동 기업의 '19년 및 '20.1월부터 '20.4월까지의 각 지원인원은

	'19.2월(성립)	'19.3월	'19.12월	'20.1월	'20.4월
채용인원		청년 4명 장년 5명	장년 9명 퇴사	청년 1명	19년 채용 청년 1명 퇴사
피보험자수	장년 4명	13명	4명	5명	4명
지원인원		3명	0명	1명	0명

⇒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 $\{4\text{명} + (13\text{명} \times 9\text{개월}) + (4\text{명} \times 1\text{개월})\} / 11\text{개월} = 11\text{명}$

<지원인원 산정>

- '19.3월~'19.11월까지는 청년 4명 중 한도인원 3명 지원
- '19.12월은 0명 지원 (기준피보험자수 대비 증가인원 없음)
- '20.1월~3월은 1명 지원 : '20년 청년 채용자 중 증가인원 0명 + 지급 월말 기준으로 '19년 청년 채용자 재직인원 4명 중 '19년 성립월말 대비 실제 증가인원 1명
- '20.4월은 0명 지원 : '20년 채용자 중 증가인원 0명 + 지급 월말 기준으로 '19년 청년 채용자 재직인원 3명 중 '19년 성립월말 대비 실제 증가인원 0명

1-4

1-3.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원 한도는 기존 기업과 같이 최대 30명까지로 함

2

지원 수준

2-1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함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30~99인 기업은 1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100인 이상은 1~2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지원금 신청서에는 30~99인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100인이상의 경우 1~2번째 채용 청년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함)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예 시

-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3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2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1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1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 지원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

예 시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여 3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20.4.15. 지원대상 청년중 1명이 퇴사하여 '20.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2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2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 ①-2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휴직·휴가, 중도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5만원 이상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 ③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2-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채용한 청년은 고용위기 지정지역에서 신규로 채용되고, 동 지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

◆ 고용위기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30~99인 기업은 1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100인 이상 기업은 1~2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5,600만원	7,000만원
30~99인	x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5,600만원
100인 이상	x	x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1,166,660원”을 지원함
- ①-2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휴직·휴가, 중도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 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5만원 이상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 1.55”을 지원함
- ③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3 지급기간 및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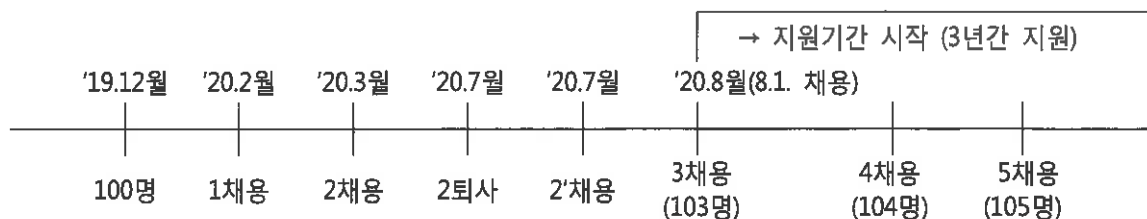
3-1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함

* 예시와 같이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님

예 시

◇ 근로자수 100명인 기업에서 3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 * 청년 3명이 모두 재직중인 '20.8월 부터 지원시작
- * 3번째 청년 채용전에 대체 채용한 2' 청년도 정규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지원기간이 시작된 '20.8.1부터 '23.7.31.까지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예 시

'20.3.1 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20.8월까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동 청년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 임금을 지급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3개월 단위(3개월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을 고용한 이후에 기존 지원자와 함께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하거나, 6개월을 고용한 신규 채용 청년만 개별적으로 지원금(6개월분) 신청이 가능하고,
-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예 시

'20.1.15. 신규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최초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청년은 '20.1월부터 6월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기업은 동 청년을 대상으로 1~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6개월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4-1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존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인원수 만큼 지원

예 시

'20.1.15. 신규채용한 A청년에 대해 '20.7월에 기업이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6개월분) 하였으나, '20.2월, '20.4월에는 근로자 수(피보험자수) 증가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 증가요건을 충족한 월(4개월분)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원가능

※ 청년근로자의 월 중간 퇴사로 월말 근로자 증가가 없으면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말 근로자 증가가 있으면 일할 계산

예 시

1.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여 3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20.4.15. 지원대상 청년중 1명이 퇴사하여 '20.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2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2명분 장려금 지원 가능
2.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10명 채용하여 10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20.4.15.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 재직자 5명이 퇴사하여 '20.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5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5명분 장려금 지원 가능
3. '19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5명 채용하여 5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20.4.15. 지원대상 청년 5명이 퇴사하고, 같은 날 청년이 아닌 장년 근로자가 5명이 입사하여 '20.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5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청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4-2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 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 *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말일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확인 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장려금 부지급 '월'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부지급" 처리 및 사업주 안내

V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1

장려금 지급 신청

1-1

신청 시기

①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② 3개월 이상 단위 신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既 참여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기존 지원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3개월분 이상(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작성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1-2 구비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1-3 서류 보완 및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장려금 지급

2-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2 지급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

2-3 중복 지원 제한

-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 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이 지침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4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I.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1-1 목 적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1-2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1-3 지도·점검 주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1-4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②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1-5 조사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②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1 근거 법령(20.8.28. 시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2-2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지급제한

- ①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2-4 추가징수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2-5 형사처벌(20.8.28. 시행)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 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3. 삭제 <2020. 8. 28.>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 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개정법 시행일(20.8.28)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VII. 시행일 및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까지 기간 중에 청년을 채용하고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21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기존 지침('20.7)에 따라 '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 지침을 적용한다.

* Ⅲ. 지원요건, 2. 신규채용 청년요건(2-5)

* IV. 지원내용, 2. 지원수준(2-1 ①·②, 2-2 ①·②)